

##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수락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1993.10.22  
제안자 : 외무통일위원장

### 1. 제안경위

국회외무통일위원회는 1993년 10월 20일 제165회 국회(정기회) 제3차

위원회에서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수락촉구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는 것임.

한국

## 2. 제안이유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상호 사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1993년 3월  
핵비확산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계속 거부  
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크게 증폭시키고 있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북한이 하루 빨리 국제원자력  
기구의 핵사찰을 수락하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도록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한국

### 3.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동북아의 안위를 위태롭게 함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데 유념하고,

북한이 1985년 12월에 가입한 핵비확산조약상의 의무인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계속 거부하면서 1993년 3월 핵비확산조약 탈퇴를 선언한 것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크게 증폭시켰음에 유의하고,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상호 핵사찰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1993년 5월 18일 대한민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의핵문제해결촉구결의안을  
상기하고,

북한에게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해온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와 총회,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가 취해온 모든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한국

1. 북한은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하여 1992. 2.19 발효된 한반도의비핵화에 관한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북한은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상호사찰을 위한 규정제정에 필요한 남.북한 협의에 즉각 응하라.
3. 북한은 핵비확산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제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국제사회에 엄숙히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4.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임시사찰 및 일반사찰과 특별사찰을 수용하여 협정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